

상근이사의 에필로그(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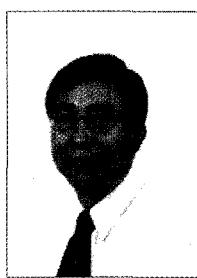
Fulltime Board of Director's Epilogue

2년간의 법제위원장을 거쳐 이사가 되었고 이사 6개월 만에 상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4년의 상근기간을 마치고 이제야 양 어깨의 짐을 덜게 되었다. 도합 6년 반을 협회의 법제 활동을 하였으나 법제도 활동과정에서 아쉬웠고 어려웠던 모습들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쉬움의 문제점들은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어려움의 해결과정은 전달되어야 하기에 필자 근무기간 중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Epilogue 1. 건축문화진흥법과 건축기본법

우연한 기회로 횡우여 의원의 건축 관련 자문 중에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안을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만들었더니 한 달 만에 의원 입법발의와 협회 주관의 국회공청회까지 일사천리다. 그러나 입법(안)에 당시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에 지진을 일으킨다.

필자 :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by Jeon, Young-cheol, KIRA



주무장관이 드러나지 않았던 공청회에서는 건설교통부도 문화관광부도, 여당도 야당도 대찬성이었던 법률안이 1년여 표류하게 되고 건설교통부는 건설 및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와 함께 건축기본법(안)을 대안 법으로 대응한다. 정부 부처내의 역학관계를 알지 못했던 우리협회의 무지로 인하여 건축문화진흥법은 사장되고 만다. 통과확률 10%도 못 될 것이라는 입법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건축기본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법안이 가지는 정부 부처 간의 역학관계를 모르는 입법추진은 절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Epilogue 2. 건축사 공제 관련 건축사법 개정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속에 금융보증업무의 추가와 손해배상가입의 의무규정이 법안변경의 핵심이었다.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보증보험사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법안이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보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지역회장들과 회장단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설득한 노력과 인내의 결과였다.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의 어려움을 느낀 법 개정이었으며 지역회장들을 비롯한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의 힘을 보여준 경우였다. 어렵게 통과시킨 법률이니만큼 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숙제는 우리협회 임직원 및 회원 모두의 몫이다.

Epilogue 3. 건축의 날 포상 확대

제3회 건축의 날(2007년)은 우리협회에서 집행위원장은 맡으며 총괄하였다. 장관표창만 있던 건축의 날 포상을 당시 직전회장이었던 이철호 고문과 당시 회장이었던 한명수 고문의 적극적인 의지와 도움으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각각 3개씩을 추가할 수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포상 담당자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5회부터는 훈, 포장을 추가시키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7회째를 맞는 아직까지 훈, 포장은 추가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건축계 모두의 숙제다.

Epilogue 4.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10년째 인상되지 않았던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은 물가인상의 반영, 친환경과 에너지인증 등을 위한 추가설계업무, BIM을 위한 추가업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포럼에서 “건축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이라는 우리 협회의 주제발표가 계기가 되어 우리협회와 주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 그리고 건축학회의 연구보고서는 최종 공청회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중이다. 짧은 연구기간으

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계는 대가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발주의 대가를 바탕으로 민간발주부분의 대가기준도 정상화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연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높은 바닥 까지 가라앉은 건축사업무대가의 현실화는 빈사상태의 건축계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pilogue 5. 건축사 등록원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제처가 승인한 부칙 내용,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건축사등록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5년여의 긴 여정 속에서 건축사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민감했던 건축사등록업무와 실무수련자 등록업무가 건축사협회의 업무로 결론지어졌다. 건축사 등록원으로 이름 지어졌던 등록업무는 건축단체 통합 논의의 계기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업무의 중요도로 보아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기를 원했었다. 2012년 5월31일부터 시작되는 건축사 등록원 업무는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들과 모든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건축사협회의 식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

Epilogue 6. 오피스텔, 건축신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변화

오피스텔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우리협회는 연구과제를 발주하였고 온돌면적과 화장실 규제 등의 제도개혁을 가져왔다. 건축신고제도는 그 대상을 축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하던 도서의 양을 늘려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설계를 통하여 시공과정에서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대상이 3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 대상의 주차장 기준보다 강화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는 연구와 올바른 논리개발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이다. 연구를 통한 논리개발은 우리협회의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Epilogue 7. 구조안전, 석면안전, 지적재산권 등 건축사의 영역 및 권리확보

구조계획은 분명한 건축설계의 일부이다. 건축구조는 5년제 건축학과의 수업과정에서는 물론 실무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계산은 전문화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의 본질이 설계과정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준비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 석면조사, 감리 등의 방향이 우리 협회의견대로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사의 영역과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광고에 사용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여 승리한 당시 회장이었던 한명수 고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계약서를 수정시킨 최영집 고문과 같은 강한 지도자로서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하다.

Epilogue 8. 건축법령 실무해설시리즈 등 전문서적의 활성화

2011년 2월에 우리협회는 창립 46년 만에 처음으로 건축법령 실무해설시리즈를 출판하였다. 건축법해설집, 건축법령집, 건축법판례집, 건축법 질의회신집 4권 1세트로 구성된 서적은 전국의 건축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인기리에 보급되었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번이라도 보완, 발행하여 발전시키고 건축법관련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 3년째를 맞이하는 건축 작품집을 비롯하여 건축학교육에 필요한 건축실무 등의 교과서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가장 큰 건축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pilogue 9. 건축서비스진흥법, 유지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법 등 추진법안

지금 건축계가 추진 중인 핵심적인 건축관련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녹색건축물 조성법(제정), 건축물 유지관리법(건축법개정), 건축기본법(개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관련단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건축계가 오랫동안 숙제로 삼았던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진흥법이다. 녹색건축물조성법은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서 건축물의 녹색화, 인증, 관리 등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법개정안은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협회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김 진애의원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 속의 “건축”이라는 용어를 “건축과 관련분야”로 변경하며 관련분야에 조경, 토목, 도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건축과 더불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이곳에 나열된 모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되기를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계 모두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야 하며 조직력과 집행력이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장 큰 몫을 해야 할 것이다.

Epilogue 10. 건축사협회와 건축계를 위하여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건축사협회를 건축계의 큰 기둥으로 인정하고 있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정부와 건축계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더욱 커진다. 대한건축학회는 학술단체로서 별도의 역할이 주어지므로 학회를 제외한 다른 건축관련 단체들과의 모임에서는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는 우리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건축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건축계가 건축사협회를 구심점으로 모이기에 결국은 건축사협회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만을 위한 활동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사협회가 건축계의 큰 바위 얼굴이 되도록 활동하고 노력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만을 위한 활동과 발언들은 우리 협회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오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계를 건축사협회만으로 떼어놓고자 노력하는 것과도 같다. 당연히 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건축사들도 품어야 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품어야 한다. 그들을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건축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회원을 위하고 건축사를 위해서 이제는 큰마음과 넓은 가슴으로 건축계 전체를 포용할 때이다. ■